

## 이용약관 변경사항 신규대비표

현 행	변 경 안
<p>제7조 (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유보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)</p> <p>①~⑤ (생략)</p> <p>⑥ 제③항에 따라, 회원을 중구민과 비중구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, ‘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비대면자격 확인서비스’를 활용한 중구민 인증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실을 <u>확인받은 경우에 한 해 중구민 등급을 부여받는다.</u> 이외 회원은 비중구민 등급으로 <u>간주된다.</u></p>	<p>제7조 (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유보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)</p> <p>①~⑤ (현행과 동일)</p> <p>⑥ 제③항에 따라, 회원을 중구민과 비중구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‘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비대면자격 확인서비스’를 활용한 중구민 인증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실을 <u>확인받거나, 외국국적자 중 국내영주권자로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체류지를 서울특별시 중구로 등록한 자료, 영주증, 외국인사실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보건소(보건지소과)에 제시하여, 그러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 해 해당 시점부터 중구민 등급을 부여받는다.</u> 이외 회원은 비중구민 등급으로 <u>간주되며, 중구민회원 등급 자격 확인은 최초 인증 이후에도 필요시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